

SAMC | LAW REVISION

1. “수입신고 수리 후 다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베트남(한·베트남 FTA, 한·ASEAN FTA)처럼 하나의 국가에 2개 이상의 특혜관세 협정이 발효된 경우 협정 간 세율차 등의 사유로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관세로 사후적용을 신청하려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협정의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면 다른 협정의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다.

[Read More](#)

2. 관세청, ‘AEX’ 이니셜 새긴 ‘인증수출자 로고’ 도입

그동안 對EU 수출 및 FTA 활용 확산에 일조해온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날개를 달아줄 인증 로고가 도입된다. 해당 로고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할 예정이며, 인증 기업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관세청은 이번 로고 도입으로 기존 1만여 인증 기업의 자긍심을 끌어올리고, 미인증 수출기업에는 해당 제도의 장점을 홍보할 수 있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의 새로운 도약이 기대된다고 8월 17일 밝혔다.

[Read More](#)

3.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 시 동종·동질물품가격 등으로 과세

그동안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납세자가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에 관련 비용을 가산해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신고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할 예정이다. 또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사전심사 범위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반으로 확대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美·中 무역갈등 불똥? 한·중 연결공정 제품 수출 시 주의하세요!

최근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對중국 관세부과(보복관세) 등 제재 조치로, 우리 업체의 해외 통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중 연결공정 제품을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가 한국産이면 한·미 FTA 협정세율 또는 일반 관세율(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중국産이면 보복관세 대상 품목에 해당돼 고율의 관세율(25%)이 부과될 수 있다. 美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부과하는 對중국 보복관세 기준은 수출국 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이기 때문이다.

[Read More](#)

2. 對中 수출 시 CCC 인증, 꼭 확인하세요!

가전제품, 완구제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강제인증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해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은 8월 14일 “중국정부가 중국 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인 CCC 인증을 변경하면서, 對中 수출기업은 변경된 CCC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시장관리감독총국은 ‘강제성 제품인증 목록 개혁조정 및 실시방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Read More](#)

3. 한·호주 AEO MRA, 8월 1일부터 전면 이행

지난해 7월 체결한 한·호주 AEO MRA를 올 8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호주에서 신속 통관, 수입 검사를 축소 등 통관절차상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 수출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관세청은 이번 한·호주 AEO MRA 발효로 우리 기업이 누리는 경제적 효과가 연간 약 10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8월 1일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지난 6월 양국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번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은 연안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양국 간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터키는 건설, 여가문화 분야 등에서 개방 수준을 높이며, 2005년 WTO DDA 협상 시 제시한 양허안보다 18개 분야를 추가로 개방했다.

[Read More](#)

2. 산업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공개...정식서명 '눈앞'

앞으로 한국산 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시 관세철폐 기간이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간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수입 할당량)는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 제한과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요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반영된다. 이로써 한·미FTA 개정협상 정식서명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Read More](#)

3. 미국·멕시코 (NAFTA) 개정 양자협상 타결

미국과 멕시코가 27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양국이 나프타 재협상에 착수한 지 1년만으로, 나프타가 개정되려면 남은 회원국인 캐나다가 미국과 멕시코 간에 타결된 잠정안에 합의하는 일이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이슈에 대한 합의를 확인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TREND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식품등의 영업허가 등의 사항 중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관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고기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업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기한을 변경한 후 7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Read More](#)

2.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공지

검사명령 기간 만료에 따른 검사명령 해제 또는 재지정 내용이 공지되었다. 첫째로 대만산 망고는 2018년 8월 29일부로 검사명령을 해제한다. 두번째로 드럼스틱(모링가)을 50%이상 함유한 분말형태의 제품,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 인도산 냉동·냉장훈다 리새우(처리형태 불문)는 검사명령을 재지정하여 1년 연장한다. 검사명령 대상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해야한다.

[Read More](#)

3.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일부 개정 고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면제 서류 개정이다. 2018년 8월 27일 부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면제 서류로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이외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ERTIFICATION TREND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및 안전인증대상에 조명기기 세부 품목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및 안전기준 마련 시 전문위원회 검토를 의무화하여 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를 개정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전관리 수준 조정에 따른 세부 기준 마련, 병행수입 면제 제품에 대한 별도 인증번호 부여 등이 있다.

[Read More](#)

2. 전략물자: 북한 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

미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 그리고 국토안보부의 관세국경보호청 및 이민세관집행국과 함께 미 국무부는 제조업체, 구매업체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를 포함한 사업체들로 하여금 미국 또는 유엔 제재 당국 산하의 제재 준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을 강조하기 위해 본 주의보를 발행한다. 사업체들은 북한이 사용하는 기만적인 수법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실사 방침, 과정 및 내부 관리를 실행하고 해당 사업체의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다.

[Read More](#)

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세부지침 제정 의견조회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2조(소량기준)에 따른 소량취급시설 대상을 정하고, 제5조(검사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시설에 대한 설치·정기 및 수시검사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을 안전원 지침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지침 내용으로는 소량취급시설 검사방법 지침의 제정 목적과 정의, 소량취급시설 해당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판단기준, 검사 신청방법 및 항목 등이 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